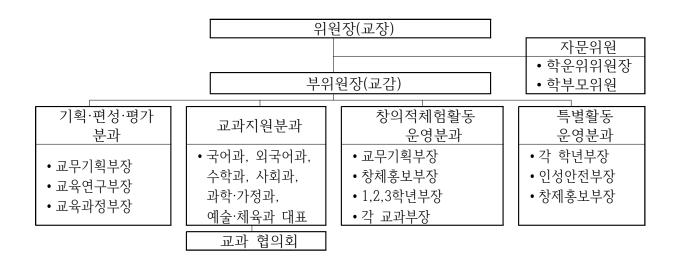
전북여자고등학교 (통합)교육과정위원회 운영규정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전북여자고등학교 (통합)교육과정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위원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위원회는 상급기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학교 구성원의 요구와 학교실정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통합 위원회 기능) (통합)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①학교교육과정위원회, ②학교평가위원회, ③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④테마식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 ⑤방과후학교소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4조(통합 위원회 구성)

- ① 학교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조직한다.
-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16명(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장(위원회별 교감)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인성안전부장, 교육과정부장, 창체홍보부장, 1,2,3학년부장, 교과대표(국어, 외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예술·체육)로 구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부모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통합 위원회 간사는 교육과정부장으로 한다. 단, 관련 위원회별로 위원 구성 및 인원과 간사를 다르게 둘 수 있다.
 - 가. 학교평가위원회 구성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와 동일하며 간사는 교육연구부 장로 한다.
 - 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건강부장, 환경봉사계, 인성안전부장, 1,2,3학년부장 등 7명으로 하며, 간사는 환경건강부장으로 한다.
 - 다. 테마식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관련 학년부장 및 관련 학년 교사 1인, 외부위원(50% 이상)은 실시 학년의 학생 및 학부모 각 1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1인, 지역위원 1인 등 7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관련 학년부장으로 한다.
 - 라. 방과후학교소위원회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 장, 학력신장부장, 1,2,3학년부장, 교과대표(국어, 외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예술·체육) 등 13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학력신장부장으로 한다.



제5조(기능 및 역할) ①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한다.

- 가.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 나. 교과별.교사별 수업시수 편성과 관련한 사항
- 다. 교과지도 계획 작성과 관련한 사항
- 라. 창의적체험활동 관련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방안과 관련한 사항
- 마. 학교평가위원회 역할 겸임
- 바. 기타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항
- 사. 위원회는 매년 2월 차기년도 운영할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매 학년도 초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OOOO)학년도 전북여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작해야 한다.
- ② 학교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 가. 학교평가 계획 수립
 - 나. 학교자체평가 실시
 - 다. 학교평가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라. 학교평가 결과의 활용
- ③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 가. 학교 봉사활동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학기 중에 추가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
 - 나.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및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계획 수립
 - 다.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
- ④ 테마식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 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학부모. 학생. 교사의 희망, 전년도 평가 결과, 관련 기관 제공자료,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시기와 장소 선정, 교육활동 프로그램, 경비 등을 심의

- 나. [수련활동] 학부모. 학생. 교사의 희망, 전년도 평가자료, 관련 기관 제공자료 등을 토대로 수련활동 시기와 장소 선정, 교육활동 프로그램, 경비 등을 심의 ⑤ 방과후학교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 가.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계획
 - 나. 연간 운영계획, 프로그램, 수강료, 강사, 교재(단가 포함) 등에 관한 사항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결과 제출
- **제6조(임기)** ① 당연직과 직책 또는 보직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원의 임기는 1년(3월~익년 2월)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위원이 결원되어 새로 구성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수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위임한다.
- 제9조(회의록 작성)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 제1조(준용규정 등)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용한다.
- 제2조(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 세부 편성 및 운영규칙은 붙임의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개정)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개정)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칙]

<붙임 1> 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칙

<붙임 2> 교육과정 편성·운영 절차

<붙임 3> 교과과정 변경요청서, 학부모 의견서, 학부모 고지사항 양식

교육과정 편성 · 운영 규칙

1. 과목 개설 기준

선택 과목 개설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하되, 교사 수급과 학생의 수요를 고려하여 개설한다.

- ① 인가된 학급당 학생 정원의 60% 이상의 학생이 신청한 경우 개설을 원칙으로 하며, 2회 이상(6월 1차, 8월 2차 조사, 이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10월 3차조사)의 수요 조사를 통해 개설 과목을 확정한다. (단,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설할 수 있다.)
- ② 위 1항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학교 교육목표 등이 추구하는 바에 부적합한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 1. 수업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 2. 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원 및 시간 강사 등의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 3. 해당 교과목의 편성·운영이 법령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 4. 기타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③ 수강 신청 취소, 위탁 교육, 학적 변동 등으로 유효한 수강 신청 인원이 ①항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인수 선택 과목'의 개설 기준에 따라 개설 여부를 판단한다.
- ④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였으나 학교의 여건 상 개설이 곤라한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안내하는 학교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등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소인수 선택 과목 개설

- ① '선택 과목 개설' ①항의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1. 학생들의 진로 역량 제고에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교과협의회에서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② 학년 말에 수강 신청 취소, 위탁 교육,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해 유효한 수강 신청 인원이 변동될 때에는 다음 원칙에 따라 개설을 결정한다.
 - 1. 다수 학생이 선택한 수강 교과목을 우선 개설한다.
 - 2. 학생의 진로 역량 제고에 효과적인 교과목을 우선 개설한다.
 - 3. 교사 수급, 시설 여건, 시간표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③ 소인수 선택 과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수강 과목 변경 포기'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 ※ 학습부담 적정화를 위해 매학기 교과목 수는 가급적 8개(과학탐구실험, 체육·예술·교 양 교과목, 진로선택과목 제외) 이하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 증배할 수 있다.

2. 과목 변경 신청 기간 및 절차

선택 과목의 변경

- ① 학생 선택 과목은 수강 신청을 실시하여, 10월 말까지 학생의 '최종 확인'을 완료하고, 교과서 주문, 과목별 수강반 수 산정, 시간표 작성, 교사 수급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② 수강 신청 '최종 확인' 이후 선택 과목에 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③ 다만, 선택 과목에 대한 '최종 확인' 이후에 학생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위 ①항의 과목별 수강반 수 및 시간표나 교사 수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이 허용되는 기간을 둔다. 변경 기간은 해당 학년도 **종업식 전까지**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강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해당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소명해야 한다.

- 1. 담임교사 상담
- 2. 과목 선택 변경 신청서 제출
- 3.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검토 및 학교장의 허가
- 4. 학부모 내방 및 학생, 학부모 서약서 제출
- ④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 수급과 학생 개인 시간표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③항의 기간 이후에는 선택 과목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⑤ 수강 중인 선택 과목의 변경은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u>단</u>,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 변경을 이유로 요청할 경우 매 학기초 10일 이내 까지만 허용하도록 한다.)
- ⑥ 교육과정 내 동아리(창체 동아리)는 학년초에 구성하여 학년말까지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동아리를 변경하고자 하면 매 학기 초 10일 이내 변경하는 것을 허락함. 동아리 변경시 학생이 활동한 내용을 동아리별로 모두 기록해야 함.

<붙임 2>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절차

준비단계	1.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조직	○ 관련 규정 검토, 역할 구체화, 조직하기, 운영 하기
	2. 기초조사	○ 관련 규정 검토 분석 ○ 계획 수립, 조사 실시, 결과 분석, 시사점 반영
편성단계	3. 편성 계획	 ○ 구성 체제 결정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향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도 ○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 ○ 편성 절차 ○ 기본 원칙 설정 ○ 편성 시 결정 사항
	4. 기본 방향 설정	 학교장 경영 방침 학교 교육 목표 교육 중점 과제 학교 특색 사업 중장기 발전 계획
	5. 학교 교육과정 시안 작성	 편제와 시간 배당 교과(군) 활동 편성 계획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계획 교육과정 지원 계획
	6. 시안 검토, 심의, 확정	○ 시안 검토 ○ 시안 심의 및 확정(학교운영위원회 심의)
	7. 교과 운영	 ○ 교과 시수 증감 운영 ○ 교과(군) 집중 이수제 ○ 블록타임(Block Time)제 운영 ○ 수업 내 개별화 지도
O 여다게	8.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격 및 목표, 유의점 파악 ○ 내용 및 운영 방법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의 사례 파악 활용
운영단계	9. 범교과 학습 운영	○ 범교과 학습 운영 방법 ○ 범교과 학습 운영의 실제
	10. 운영 관련 기타사항	 ○ 학습더딤학생 교육 ○ 귀국자,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 인적 · 물적 자원 활용 ○ 돌봄 교실 운영 ○ 교육과정 변경 운영
평가단계	11. 학교 교육과정 평가와 개선	 ○ 학교 교육과정 평가 ○ 학교 교육과정 연구와 개발 ○ 학교 교육과정 기본 계획 ○ 교과 교육과정 및 학습지도 ○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 및 운영 ○ 학교 교육과정 지원 체제 ○ 학년(군) 학급 교육과정 평가 ○ 교육과정 지원 평가 ○ 개선점 추출, 다음해의 편성・운영에 반영

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절차

1단계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 기초 작업	● 2015 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 공유 ② 학교 교육과정 시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③ 학교 여건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규정 마련
	П	
	Ţ	
2단계	의사결정 합의	①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개설 과목 범위 설정
		── ❷ 개설 과목의 이수 단위 결정
	Û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별 권 .	❶ 진로별 주요 선택과목, 연관 선택과목 등에 대한 안
3단계	¬ᆼ ¬누노 뎅 단도를 된 장이수 과목 및 선택과목 안	내
0071	영어구 파락 및 전략파락 한 F 내	❷ 과목 안내서 제작 및 보급
	니	❸ 과목 선택을 위한 진로·진학 상담 실시
	Û	
4 = 1 31	학생 선택 조사	❶ 이수 희망 과목 선호도 조사
4단계		❷ 편성 방법 및 세부 사항 마련
	Ţ	
5단계	개설 가능 과목 확정 및 과목	① 개설 과목 확정
	별 수업 시간 배치	❷ 과목별 수업 시간 배치
	Û	
	수강 신청 및 수업 시간표 작	❶ 과목 선택을 위한 상담
6단계		❷ 수강 신청
		 ❸ 수업 시간표 작성 (조정 및 확정)
	Û	
	교사/교실 배정 및 시간표 출	■ 교사 및 교실 배정
7단계	력	── ❷ 학생별, 교사별, 교실별 수업 시간표 출력
8단계	수업 운영	■ 개인별 시간표에 따른 학생 이동 수업
		❷ 공강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L		

<≣임 3> 교과과정 변경요청서

제 학년 반 번 성명: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부모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자 요청합니다.

- 다 음 -

1. 변경 과정/과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과정/과목		

()(과정/과목)에서 ()(과정/과목)과정으로 변경

2. 변경 사유 :

2021년 월 일

본 인: (인)

보호자: (인)

전북여자고등학교장 귀하

학부모 의견서

제 학년 반 번 성명:

의 견: 탐구교과 선택과목이 적성에 맞지 않아 ()과목에서 ()과목으로 변경하고, 변경에 따른 진학선택에 불이익이 있으면 감수하기로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학생 성명: (인)

학부모성명: (인)

학부모 고지 사항

담임: (학년 반)

2학년 1학기를 ()으로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2학년 2학
기부터 ()으로	계열을 변경	함으로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 대학 진학시 이수과목	부족으로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기타 진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u>.</u>
계열 변경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빈	더라도 이를 학생과 학부모께서
감수하시겠습니까?		
예(), 야기	⊣오()
	2021년 월	일
		학생 성명: (인)
		학부모성명: (인)